

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4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1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신천 가창교 하류 도심구간에 구역별 관리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,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·군으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취소하고,
- 나. 법령 개정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된 사무 및 사무분장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임사무 삭제(안 별표 2)

- 「하천법」 제8조제2항(하천관리청)에 따라 구·군에 기 위임한 지방하천관리 사무 중 신천 가창교 하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취소
- 「사방사업법」 개정('11.7.14.)에 따라 원인자 부담제도가 폐지되어 위임사무 삭제

나.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(안 별표 2)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('22.1.13.)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 시행 사무의 근거조항 정비
- 「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지원 조례」 제명 변경('21.7.12.)에 따른 위임사무명 등 정비

다. 사무분장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(안 별표 2)

- 사무분장 개정('20.7.10.)에 따른 일부 위임사무(공원·유원지 행정재산

관리)의 소관부서 변경(산림녹지과 → 공원조성과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9. 30. ~ 10. 2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5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문화예술정책과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문화예술정책과	1	문화재 수리 공사 시행	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 다목
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2 중 복지정책과, 장애인복지과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복지정책과, 장애인복지과	2	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신청접수 및 서비스 지원	「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」 제4조제1항 및 제5조
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2 중 맑은물정책과란 다음에 공원조성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공원조성과	1	공원·유원지 등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취소 나. 행정재산 권리보전, 대장 작성 관리 및 실태조사, 공유재산 현황 작성 다.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변상금의 징수	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4조 같은 법 제20조·제25조 같은 법 제44조·제47조 같은 법 제81조·제83조
-------	---	---	--

별표 2 중 산림녹지과란의 제7호차목을 삭제하고, 같은 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산림녹지과	8	녹지·임야 등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취소 나. 행정재산 권리보전, 대장 작성 관리 및 실태조사, 공유재산 현황 작성 다.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변상금의 징수	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4조 같은 법 제20조·제25조 같은 법 제44조·제47조 같은 법 제81조·제83조	
-------	---	--	--	--

별표 2 중 수변공간개발과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변공간개발과	1	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(다만, 신천 가창교 하류는 제외한다) 가. 권리의무의 승계 등 나. 하천관리 상황의 점검 등 다.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라.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마. 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바. 하천공사 및 유지·보수 사. 하천시설물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나 유지·보수 아.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자. 하천공사의 착수신고 및 준공인가 차.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카.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타.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파.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하. 공익을 위한 처분 등 거. 하천관리원의 임명 및 필요조치를 명하는 권한 행사조치 너.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 및 출입 더.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	「하천법」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제2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27조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75조	
---------	---	---	---	--

	<p>러. 하천 안에서의 금지지역의 지정 및 공고</p> <p>며. 하천의 사용금지 등</p> <p>버. 원상회복, 면제, 비용의 예치</p> <p>서. 하천구역에 편입·지정된 토지의 조사, 공고 및 협의</p> <p>어. 폐천부지 등의 고시</p> <p>저. 청문</p>	<p>같은 법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</p> <p>같은 법 제47조</p> <p>같은 법 제48조</p> <p>같은 법 제7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</p> <p>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</p> <p>같은 법 제91조</p>	
--	--	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 (문화예술정책과)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4. 생략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~나. 생략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~마. 생략

6.~7. 생략

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)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.

1. 시·도

가.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

나. 시·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

다.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·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

라. 국가와 시·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·조정 등의 사무

마. 시·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

바.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

2. 시·군 및 자치구

제1호에서 시·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. 다만,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.

□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장애인복지과)

제4조(자립생활지원 신청) ①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)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자립생활지원 내용)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활동지원급여
2. 장애인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
3.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·홍보
4.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·보수
5.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수리
6.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
7.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
8.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연계
9. 장애인 권익옹호
10.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산림녹지과·공원조성과)

제14조(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되,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게 할 수 있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·처분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“재산관리관”이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(補填)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·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.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47조(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·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·분석하여야 한다.

□ 사망사업법(산림녹지과)

제19조(원인자부담) ①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망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망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5. 12. 29., 2001. 7. 24., 2006. 12. 28.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사 또는 행위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가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2. 12. 30., 2006. 12. 28.>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 <개정 2006. 12. 28., 2008. 2. 29.>

제19조 삭제 <2011.7.14>

□ 하천법(수변공간개발과)

제8조(하천관리청) 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.

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·도지사가 관리한다.

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개정안은 기 위임한 사무의 일부 위임을 취소하고,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등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,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진혁